

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 
(의안번호 제452호)

심사보고서

1997. 11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1. 22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1. 24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11. 2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하수도법 제5조의 2(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)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'98.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: 2,479백만원
- 용자재원 : 환경개선 특별회계
- 이율 : 년리 5.0%
- 상환조건 : 5년거치 10년상환
- 상환재원 : 군비(양여금)

4. 사업계획

- 위 치 : 고성읍 죽계리 845-2번지 일원
- 시설용량 : 14,000㎡ / 1일
- 총사업비 : 27,500백만원
- 사업기간 : 1997년 ~ 2002년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하수도법 제5조의2(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)에 의하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남도의 97년도 하수처리장 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하면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총사업비의 70%를 용자하고 나머지 30%는 도비 15%, 군비 15%를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당해년도 용자금을 채무부담으로 예산 편성하고 향후 양여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시킬 예정이라 하였으므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1일 용량이 14,000m<sup>3</sup> /1일 이면 충분한가
- 답 : 환경부 용역에 의하여 결정된 용량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용량이 부족하다.
- 문 : 부족용량 대책은
- 답 :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에 의거 2001년에는 인구가 32,000명으로 예상되고 현재 분류식 처리방식으로 되어 있어 오수분리가 어려우므로 합수처리 계획으로 바꾸고 용량도 확대하려면 재원이 국고보조 70%이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다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

- 1997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